

2016년 3월

대출 중 유의사항



목차



1.	대출기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2
2.	차용자가 서명한 후에 대출기관이 차용자의 대출을 변경할 수 있는가? 차용자가 합의한 변경 대출기관에 의한 변경 다른 대출기관에 대출 이관	4 4 5
3.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6
4.	차용자가 신규 대출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가?	6
5.	조기 상환	7
6.	추가 자문 및 정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7

본 가이드는 대출 시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하는 세 가지 시리즈 중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들 가이드는 차용자의 권리와 유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 → 대출계약 전
- → 대출 중
- → 대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2003년 신용 계약 및 소비자금융법(**소비자금융법**)은 개인적인 이유나 가계상의 이유로 대출을 받을 때 차용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소비자금융법은 대출 시 대출기관이 따라야 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이들 규칙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 대출기관은 항상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고, 차용자를 합리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
- → 차용자는 정기적으로 대출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며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 대출기관은 변경 발생 시기 등 차용자가 대출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정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 → 대출기관이 대출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출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대출기관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알린다.

1. 대출기관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대출기관이 대출 과정 내내 '**대출기관 책임**'을 충족할 것이라고 차용자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기관이 항상 신중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고, 차용자를 합리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 중 가장 중요한 대출기관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거래 내내 차용자를 **합리적으로**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
- → 대출 과정 내내 차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명확**, **간결**, **정확**해야 한다.
- 변경 발생 시기 등 차용자가 대출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정확한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 대출계약이 강압적이지 않으며 대출기관이 차용자를 강압적으로 대하지 않는다.

또한,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및 남은 상환액 등과 같은 대출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 대출 변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 차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 → 문제가 발생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자세한 내용은 동일한 시리즈의 세 번째 가이드 참조: 대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대출기관이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차용자의 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출기관이 계약 변경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경우,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차용자에게 부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문가와 상담하거나 지역 법률 센터 또는 지역 자문센터에 연락하여 차용자 권리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대출 관련 정보의 정기적인 수신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 대출기관에서 대출 관련 내역서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은행에 신용카드나 예정된 초과 인출이 있는 경우, 차용자는 적어도 45일에 한 번씩 내역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역서의 목적은 대출금, 상환 이자, 남은 상환액 등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상환 내용이 올바르게 표시되는지, 예상치 못한 수수료나 기타 비용이 청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내역서는 지정된 기간 동안에 관한 내용이어야, 다음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 개시 잔액 및 결산 잔액
- → 각 상환액
-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및 대출에 추가된 금액
- → 대출기관이 부과하는 이자 및 수수료
- → 연이자율

신용카드 내역서의 경우, 요구되는 최소 상환에 대한 내역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내역서에 접속하는 데 동의한 경우와 같이, 대출기관이 내역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차용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대출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대출 내역서를 받은 지 6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대출 내역서를 받았지만 이러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소 200달러). 금융 자문가와 상담하거나 지역 법률센터 또는 지역 자문 센터에 연락하여 차용자 권리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대출기관이 차용자에게 대출상환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차용자 또는 차용자의 자문가는 통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가이드 마지막에 있는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대출기관은 대출 내역서(최소 6개월에 한 번)와 신용카드 내역서(최소 45일에 한 번)를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차용자는 대출을 받고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대출기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연락처세부 정보와 영업 시간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거나 해당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차용자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차용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계약 체결 시에 서명한 초기 공개문서를 확인하십시오.

차용자는 또한 대출 기간 동안에는 언제든지 대출에 관한 최신 정보(예: 상환 내역, 남은 상환액 및 대출계약서, 이전 내역서 등 중간에 잃어버린 문서의 사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차용자가 정보를 요청하면 언제든지 즉시 응답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이 추가 정보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 대출기관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2. 차용자가 서명한 후에 대출기관이 차용자의 대출을 변경할 수 있는가?

예, 대출 약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차용자와 상의 없이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용자의 대출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기관은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변경사항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합니다. 대출기관이 변경한 모든 사항은 차용자에게 강압적이거나 불합리하게 가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차용자가 합의한 변경

대출기관은 차용자에게 변경사항에 합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차용자는 대출기관에 계약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로 합의한다면, 변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이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질문을 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은 일반적으로 변경사항이 적용되기 전에 변경사항에 대해 명확한 서면 정보를 차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이 합의된 변경사항에 대해 차용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은 아래 표를 참조하십시오.

합의된 변경	변경 정보 수령 시점
대부분의 변경(아래 열거된 내용 제외)	변경 시작 전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변경사항(예: 상환액 축소)	다음 번 정기 내역서와 함께
신용한도에서 차입할 수 있는 금액 증가(예: 신용카드)	5일 이내에 또는 다음 번 정기 내역서와 함께
담보권 해제(즉, 미상환 시 대출기관이 압류할 수 있는 품목 목록에서 특정 품목 삭제)	다음 번 정기 내역서와 함께
상환 기간연장	다음 번 정기 내역서와 함께

차용자와 대출기관이 다음과 같이 합의한 경우, 일부 변경은 더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대출상환 기간연장
- → 신용한도 상향조정

이러한 유형의 변경을 수행하기 전에 대출기관은 다음을 통해 대출기관의 책임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용자가 변경사항을 이해하고 변경사항에 합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
- 제안된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도 큰 고충 없이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
- 제안된 변경이 이루어진 후에도 대출이 여전히 차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확인

대출기관에 의한 변경

대출기관은 차용자의 합의 없이 이자율 또는 수수료를 높이기 위해 변경할 수 있다고 대출계약에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대출기관이 변경할 수 있도록 차용자가 사전에 허가를 한 경우입니다.



대출계약에 따라 대출기관이 차용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이자 및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차용자의 합의 없이도 변경을 할 수 있지만, 변경이 적용되기 전 5영업일 이내에 여전히 변경을 할지 여부를 차용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적용되는 기간은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용자에 의한 변경	변경 정보 수령 시점
이자율 인상 또는 이자 계산 방식 변경	변경 시작 후 5영업일
금액, 기간 또는 상환액 계산 방법 변경	변경 시작 후 5영업일
수수료/제반비용 변경 또는 이들의 계산 방법 및 부과 시기	변경 시작 후 5영업일
신용한도 변경(차입 가능 금액)	변경 시작 후 5영업일
대출을 신규 대출기관에 이관	이전 후 10영업일
상환액이 더 적음을 의미하는 변경	5영업일 또는 다음 번 정기 내역서와 함께 – 대출기관이 결정
상환 기간연장	5영업일 또는 다음 번 정기 내역서와 함께 – 대출기관이 결정

대출기관은 이러한 변경사항에 대해 항상 직접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기관이 이자, 수수료 또는 제반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대출기관은 웹사이트 고지, 사업장 표지판, 지역 신문 광고를 통해 차용자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차용자는 기대하지 않은 변경이 있을 경우, 내역서를 주의 깊게 읽고, 계좌에서 인출되는 자동 이체 금액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대출기관에 이를 조회(직접 또는 금융 자문가를 통해)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출기관의 변경이 강압적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은 차용자의 대출을 변경할 때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은 모든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대출기관에 대출 이관

대출기관이 사업이나 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에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기관이 차용자의 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대출의 다른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차용자가 동의하거나 대출계약서에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신규 대출기관이 대출 약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관 후 10일 이내에 차용자는 다음을 받아야 합니다.

- → 신규 대출기관의 연락처
- → 신규 대출기관의 등록 내역
- → 신규 대출기관의 분쟁 해결 기구(신규 대출기관이 분쟁 해결 기구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된 경우 제외)
- → 이관 날짜
- → 차용자에게 이관이 갖는 의미(예: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 시 지불 장소)

3.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부채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연체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대출기관 또는 금융 자문가(차용자 대신 대출기관에 문의할 수 있는)와 상의하십시오.

대출기관은 상환 기간연장, 단기간 동안 소액 상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함으로써 차용자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고충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기관은 대출 약관 변경을 심사하여 일시적인 고충 구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고충신청을 하는 데에는 기준이 적용되며, 여기에는 신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고충신청서 또는 기타 옵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출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가이드를 참조하십시오.

4. 차용자가 신규 대출기관으로 옮길 수 있는가?

예, 대출을 신청한 후 신규 대출기관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또는 수수료가 낮은 대출기관을 찾는 경우 옮기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약관을 확인하십시오. 일부 대출계약에 따라서는 차용자가 조기에 옮기는 경우 대출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기관은 차용자의 이자 지급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기관이 이러한 수수료에 대해 추가 대출을 해줄수 있지만, 이는 여전히 현재 대출을 유지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대출 비용입니다. 또한 신규 대출기관이 신규 대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출기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현재 대출의 전반적인 비용과 약관을 신규 대출과 비교하고, 옮길 경우 더 나아질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기관을 옮기는 비용이 추가된다면, 그럴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Sorted 웹사이트(www.sorted.org.nz)에서 가장 적합한 옵션을 찾아보십시오.



부과되는 모든 대출 수수료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강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 적절한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5. 조기 상환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빨리 상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조기 상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 지불액은 절감되지만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 또는 '조기해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원래 대출금에서 차용자가 상환해야 할 이자가 빠지기 때문에 청구되는 것입니다.

조기 상환 또는 추가 수수료에 관한 질문이 있는 경우, 차용자가 이러한 수수료를 확인하고 대출기관 또는 금융 자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대출기관은 대출 해지 전에 이러한 수수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추가 자문 및 정보

지역 시민상담소(www.cab.org.nz 또는 0800 367 222), 지역 법률 센터 (www.communitylaw.org.nz) 또는 예산 자문 서비스(0508 283 43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관이 어떠한 식으로든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한다면 차용자 또는 차용자의 자문가도 통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경우에는 조사 및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차용자는 이의제기서 또는 전화(0800 943 600)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가요?

소비자금융법에 관한 팩트 시트를 확인하십시오.

차용자에 대한 대출기관의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임감 있는 대출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본 가이드는 위원회의 견해를 반영하여 참조용으로만 제공됩니다. 또한 확정본이 아니며 법률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책임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업데이트 관련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구독이 가능합니다. www.comcom.govt.nz/subscribe.

당사가 시행하는 법률 위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800 943 600 우편: Enquiries Team, PO Box 2351, Wellington 6140

이메일: contact@comcom.govt.nz

www.comcom.govt.nz During your loan – Korean

